

질병·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□ 수급자격 인정 요건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9호)

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(①**직무수행 곤란성**),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업무종류의 전환, 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음에도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(병가)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퇴사(②**이직회피노력**)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됨(단,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질병·부상 등에 대한 치료의 결과로 ③**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하고, 아래의 준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함.**)

※ 피보험자의 부상·질병이 **3개월(13주)**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. 다만,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등 근무와 치료가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

□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서류

① 병원 진단서(근무 중 발생여부, 직무수행의 곤란 여부 판단)

- 환자의 인적사항, 병명, 발병일 및 진단일,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(치료예상기간, 입원의 필요성 등)
- 의사의 진단 당시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웠는지 여부

② 사업주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(이직회피 노력 등 판단)

- 근로자가 직무전환,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해 이직(퇴사)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
③ 퇴사 후 병원 진료내역서, 입·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

- 퇴사 후 어떠한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 확인

④ 의사 소견서(수급자격 신청 현재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확인)

- 질병·부상 등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(완치)되어 현재 재취업활동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 기재되어야 함(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)

□ 주의 사항

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,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(120일~270일) 전부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일 후 1년 이내 **수급기간 연기 신청**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.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57~9, 8939)